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506306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 고 1. A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유승수, 김소중
변 론 종 결 2019. 10. 31.
판 결 선 고 2019. 12. 12.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128,612원 및 이 중 20,012,512원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19. 4. 4.까지 연 10%, 2019. 4. 5.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A에 대하여: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8.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20,128,612원과 이 중 20,012,512원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28,612원과 이 중 20,012,512원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의 부탁으로 피고 A이 C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는데 신용보증하기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2009. 5. 4. 보증금액 50,000,000원, 보증기한 2010. 5. 3.로 한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A은 그 무렵 C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위 신용보증 약정 당시 피고 A은 대출금에 대하여 상환지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피고 A을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채채무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이후 2010. 4. 29.경 보증기한 2011. 5. 3.로, 2011. 4. 22. 보증금액이 4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이 2012. 5. 3.로, 2012. 4. 16. 보증금액이 35,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이 2013. 5. 3.로, 2013. 4. 30.경 보증기한이 2014. 5. 2.로, 2014. 4. 28.경 보증금액이 34,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이 2015. 4. 30.로, 2015. 4. 28. 보증금액이 27,200,000원으로, 보증기한이 2016. 4. 29.로, 2016. 4. 25.경 보증금액이 24,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이 2017. 4. 28.로, 2017. 4. 26.경 보증금액이 19,620,000원으로, 보증기한이 2018. 4. 27.로 각 변경되어 왔다.

나. 피고 A이 2018. 4. 28. 대출원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C은행은 2018. 5. 31.경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8. 8. 14. 20,012,512원(원금 19,620,000원)을 C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라.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원고의 업무방법서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신용보증약정서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신용보증을 받은 채무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채무자로부터 원고가 보증한 채무 중 피고 A이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방법서 제7조 제1항 제1호의 이사회에서 정한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보증금액 19,620,000원에 대하여 보증기한 만료일 다음날인 2018. 4. 28.부터 대위변제일 전날인 2018. 8. 13.까지에 대한 위약금은 116,100원이다.

마. 피고 A은 2011. 12. 30. 별지 목록 기재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4. 23. '2018.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8. 5. 14. '2018.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 A은 2018. 4. 20.경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20,012,512원에 위약금 116,100원을 더한 20,128,612원 및 이 중 대위변제금 20,012,51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일인 2018. 8.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4. 4.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인 2019. 4. 5.부터 2019. 5. 31.까지는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인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와 같이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A이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 B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나.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등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피고 A이 보증사고 발생 직전인 2018. 4. 20.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잘 아는 사이인 피고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3일 뒤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는바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은 약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특별한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으로 무자력이 되었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가 다시 D, E에게 이전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 이므로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피보전채권액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2009. 5. 4.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이후 신용보증약정의 기한 및 보증금액이 변경되어 오던 중 2018. 4. 28. 원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8. 8. 14. C은행에 피고 A의 채무 20,012,512원을 대위변제하여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금 20,012,512원, 미수위약금 116,100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법률행위가 2018. 4. 20.자로 이루어졌고 원고의 구상금 채권 등은 대위변제한 2018. 8. 14. 발생하였지만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2009. 5. 4.경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A이 2018. 4. 28. 원금 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원고가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가능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 남짓 지난 2018. 8. 14. 실제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행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다.

2) 피고 B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매매를 대행해 주고 그 매매대금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가) 인정사실

① 피고 A은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한 2009년 전부터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건물의 G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해 오고 있었다. 피고 A은 H의 사업

장소제지와 같은 건물에서 I이라는 상호로 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②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7. 10. 12. 채권최고액 445,2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J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③ 피고 A의 아버지가 2018. 4. 11.부터 2018. 4. 22.까지 K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왔고, 2018. 4. 22.까지 발생한 본인부담금 진료비가 10,000,000원이 넘게 발생한 상태였다.

④ 2018. 4. 20. 당시 피고 A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하고 피고 A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⑤ 피고들은 2018. 4. 20.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는 ㉠ 피고 A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 B에게 이전하여 주고, ㉡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550,000,000원에 매물로 내놓으며, ㉢ 피고 A이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이 62,454,747원임을 확인하고, ㉣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제반비용을 피고 B이 우선 부담하며, ㉤ 피고 B이 받아야 할 물품대금 및 우선지급한 제반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최우선으로 충당하고, ㉥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으로 피고 B에 대한 모든 물품대금 및 제반비용이 변제되고 남은 대금은 전부 피고 A에게 지급하며, ㉦ 기타 대출승계문제 등 부동산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⑥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4.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D, E과 2018. 5. 10. 매매대금 59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14. D,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2018. 4.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한 법무사사무실에 수임료, 취득세 등 제반 경비로 8,528,500원을 지급하였다.

⑦ 피고 A에 대한 거래처로서 채권자인 L 주식회사는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얻었고 2018. 5. 9. 이 사건 아파트에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⑧ D은 피고 B의 계좌로, 2018. 5. 10. 9,000,000원, 2018. 5. 14. 108,740,890원, 191,890원 합계 117,932,780원을 입금하였다.

⑨ D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위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2018. 5. 14. 피고 B에게 22,000,000원¹⁾이, M에게 2,480,000원이, 피고 A의 배우자 N에게 10,000,000원이 각 지급되고, 2018. 5. 31. N에게 40,000,000원이, B에게 40,000,000원이 각 지급되었다.

위 피고 B의 계좌에, 피고 B이 2018. 6. 1. 90,000,000원²⁾을 입금하고, 2018. 6. 12. 7,000,000원(I 명의로)을 입금한 후, 2018. 6. 12. 11장의 자기앞수표(액면금 합계 94,130,000원)가 발행되었다.

2018. 6. 12. 발행된 자기앞수표 11장은 한 장씩 피고 A에 대한 채권자인 O(액면금 22,430,000원), P(액면금 11,760,000원), 주식회사 Q(액면금 11,070,000원), R 주식회사(액면금 6,880,000원), S(T, 액면금 3,800,000원), U 주식회사(액면금 4,000,000원), V(액면금 3,800,000원), 주식회사 W(액면금 2,420,000원), X(액면금 5,000,000원), Y(액면금 1,750,000원), Z(액면금 21,220,000원) 교부되었다. 위 채권자들은 피고 A(H) 앞으

1) 이체수수료로 보이는 500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피고 B의 주장에 의할 때 매수인인 D으로부터 지급받은 잔금이다.

로 위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입금표를 발행하였다.

⑩ 피고 B이 2018. 6. 15. 10,000,000원(I 명의로)을 입금한 후 2018. 6. 15. 5장의 자기앞수표(액면금 합계 9,580,000원)가 발행되었다. 2018. 6. 15. 발행된 자기앞수표 5장은 피고 A에 대한 채권자인 I(피고 B, 액면금 7,840,000원), AA(AB, 액면금 800,000원), 주식회사 AC(액면금 310,000원), AD(액면금 380,000원), AE(AF, 액면금 250,000원)에게 교부되었다. 위와 같이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피고 A에 대한 채권자들은 피고 A(H) 앞으로 위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입금표를 발행하였다.

⑪ 피고 A에 대한 채권자인 AG(AH)은 2018. 6. 18. 65,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입금표를 피고 A(H) 앞으로 발행하였다.

⑫ 피고 A의 J 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371,000,000원은 2018. 5. 14. 전액 변제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5. 14.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8. 5. 15. 말소되었다.

⑬ L 주식회사는 AI 앞으로 2018. 5. 14. 17,500,000원을 입금받았다는 입금표를 발행하였고 이 입금표는 피고들 측에서 보관하고 있다. 또한 L 주식회사는 2018. 5. 14. 위 돈과 별도로 4,500,000원을 피고 A(H)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입금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L 주식회사가 한 가치분등기는 2018. 5. 14.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8. 5. 16. 말소되었다.

⑭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에 관하여 피고 B은 2018. 7. 31. 위 피고 B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10,550,60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피고 A

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회신 결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주식회사 Q, T(S), AJ(W), AK(P), AG(AH), R 주식회사, AL(O), U 주식회사, 주식회사 AM의 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②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이 이전비용 등을 먼저 부담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받은 돈 중 남은 돈은 피고 A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그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피고 A과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이는 통상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즉 모든 권리를 일정한 대가(금전)를 받고 처분하는 매매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합의서에는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받은 매매대금에서 피

고 B이 피고 A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액(62,454,747원)을 최우선충당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매수인 D이 피고 B 계좌에 매매대금을 입금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에 소요되는 비용, 피고 A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거주지를 매도하면서 그 후 생활에 최소한 필요한 전세보증금 30,000,000원과 피고 A의 아버지 병원비용 등 명목의 20,000,000원 등을 제하고, 남은 돈 103,775,000원으로 피고 A의 사업(H) 관련 채권자들의 채권액(862,173,296원)을 각 채권자별로 일정비율로 계산하고 그 금액을 액면금액으로 하여 채권자 한 명당 자기앞수표 한 장씩이 발행된 점, 피고 B도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받은 돈에서 자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액 62,454,747원 중 7,840,000원(채권액 대비 약 12.5%)만 지급받은 점, 피고 B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에서 일부 채권을 회수한 자들이 피고 A 앞으로 입금표를 발생한 점, 2018. 4. 20. 피고 A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한 연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역시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2018. 4. 20. 무렵 피고 A의 아버지 진료비 내역에 비추어 위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2018. 4. 22. 현재 진료비 총액이 42,591,870원이고 그 중 환자부담총액도 10,855,600원 상당이다) 거래처 채권자들이 다수이며 그 금액이 8억 원을 넘는 점에 비추어 상당한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사정도 알 수 있는 점, 피고 B 명의로 D, E과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590,000,000원이 염가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 B의 변제독촉을 받은 상태에서 피고 A이 믿을 수 있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 및 다수 채무자들과의 협의를 맡긴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리고 피고 A에 대한 채권자인 L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시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피고 B에게 넘어간 후 보름 정도 지난 시점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입금된 날 바로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액면금으로 한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어 지급된 점에 비추어 피고 A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B에게 이전할 무렵이나 그 직후 다른 채권자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은 채무자인 피고 A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업상 부담하게 된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처분행위의 일환으로서 제3자에 대한 매도, 매매대금을 통한 다수 채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B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D, E에게 처분함으로써 얻은 돈은 대부분 피고 A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일부 금원이 피고 A의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나 이 용도에 사용된 금원 역시 피고 A의 변제자력의 유지에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 B이 만족을 얻은 채권액이나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으로 만족을 얻은 채권자의 수 등에 비추어 채무자인 피고 A이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다)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2018.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은 그 실질이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설령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B의 악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보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을 원고의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도봉구 AN에 있는 AO아파트 AP동

[도로명주소] 서울 도봉구 AQ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AR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조

면 적: 99.75m²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 도봉구 AN 대 46643.5m²

2. 서울 도봉구 AS 대 49347.4m²

대지권종류: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95990.9분의 69.95 -끝-